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24 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김미애·강기윤·김정재

최형두 • 이종성 • 박덕흠

전봉민 • 권영세 • 전주혜

정희용 · 김예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그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 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9조제2항,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4항 본문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제19조의4제1항 중 "1회"를 "3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육아휴직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 - ②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육아휴직) ① (생 략)	제19조(육아휴직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<u>1년</u> 이	② <u>2년</u>
내로 한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	4
간은 <u>1년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	<u>2년</u>
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	
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	
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	
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	
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	
기간 이내로 한다.	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	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
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	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
근로자는 육아휴직을 <u>1회</u> 에 한	3 <u>ই</u>]
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